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반호 관련 1106

제안년월일 : 2019년 12월 18일

제 안 자: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비영리영역의 다양성, 확장성 등을 고려해 프리랜서 지원 단체의 범위를 확대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가. "비영리민간단체"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 설립한 비영리 법인·단체·기관"으로 변경함(안 제12조 제1항 후단).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 제4항의 "세부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안 제12조 제1항 후단 중 "서울특별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경우"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설립한 비영리법인·단체·기관"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공정거래 지침) ①	제9조(공정거래 지침 등)	제9조(공정거래 지침 등)
~ ③ (생 략)	① ~ ③ (생 략)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u>〈신 설〉</u>	④ 공정거래 지침 등을	④ 공정거래 지침 등을
	개발·보급·적용하기 위	개발·보급·적용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	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
	<u>부규칙</u> 으로 정한다.	<u>칙</u> 으로 정한다.
제12조(기관 • 단체 지원)	제12조(기관 ㆍ 단체 지원)	제12조(기관 ㆍ 단체 지원)
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1 1	1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과 <u>단체</u> 에 대하여 예산	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의 범위에서 행정적、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u>사항</u>	
다. <u>〈후단 신설〉</u>	이 경우 지원은	이 경우 지원은
	<u>서울특별시에 비영리민</u>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u>간단체로 등록한 경우</u> 에	<u>서울특별시에 설립한</u>
	한한다.	<u>비영리법인·단체·기관</u> 에
		한한다.
<u>〈신 설〉</u>	1. ~ 6. (생략)	<u>1. ~ 6. (개정안과 같음)</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공정거래 지침)"을 "(공정거래 지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항상을 위하여"를 "항상과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포함 한"으로, "(이하 "공정거래 지침"이라 한다)"을 "(이하 "공정거래 지침 등"이라 한다)"으로, "보급한다"를 "보급、적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침을"을 "지침 등을"로, "지침의 준수를"을 "지침 등의 준수、적용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침"을 "지침 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정거래 지침 등을 개발·보급·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설립한 비영리법인·단체·기관에 한한다.
- 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지원
- 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등

- 3. 프리랜서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
- 4. 업종별 불공정거래 관행 사례 조사 및 폐지를 위한 캠페인
- 5.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 6. 그 밖에 시장이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제9조(공정거래 지침) ① 시장은 프리랜 서의 권익 보호와 지위 <u>향상을 위하여</u>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침 (이하 "공정거래 지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기관 으로 하여금 공정거래 <u>지침을</u> 따르도 록 하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또는 민간 기업、기관、협회 등의 장에게 공정거 래 <u>지침의 준수를</u> 권장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기관 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등 을 받는 민간기업、기관、협회 등으로 하여금 공정거래 <u>지침</u>을 따르도록 요 청할 수 있다.

〈신 설〉

정한다.

제12조(기관 · 단체 지원) ① 시장은 프 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 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예 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 정 안

제9조 <u>(공정거래 지침 등)</u> ①
<u>향상과 계약</u>
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
준계약서를 포함한
- (이하 "공정거래 지침 등"이라 한다)
<u>보급·적용한다</u> .
②
지침 등을
지침 등
<u>의 준수·적용을</u>
③
<u>지침 등</u>
④ 공정거래 지침 등을 개발·보급·적용

제12조(기관、단체 지원) ① 시장은 프 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 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가 원활히 활 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설립한 비영리법인·단체·기관에 한한 다.
<u>〈신 설〉</u>	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지원
<u>〈신 설〉</u>	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 <u>훈련 등</u>
<u>〈신 설〉</u>	3. 프리랜서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
<u>〈신 설〉</u>	4. 업종별 불공정거래 관행 사례 조사 및 폐지를 위한 캠페인
<u>〈신 설〉</u>	5.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u>〈신 설〉</u>	6. 그 밖에 시장이 프리랜서 권익보호 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